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세부(내역)사업명	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(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)	젙	^넘 수번호	
연구개발과제명				
주관연구개발기관			연구책임자	
연구개발기간	2023.	5. 1. ~	2023. 12. 31. (8개월)

검토 내용		예		아니오	
□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					
▶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맞지 않는가?	,				
.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(Yes)	()	()	
.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((Yes)					
.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(Yes)					
□ 신청자격 부합 여부 ▶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(단체) 또는 사람이 있는가?	()	()	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					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?	()	()	
	,				
 ►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중복투자, 기술개발의 필요성 또는 사업화에 우려가 있는가? 	()	()	
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				
▶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보고서	()	()	
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가?					
□ 참여제한 여부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
▶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	()	()	
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?					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				
▶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?	()	()	
▶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는가?					
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	()	()	
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					
▶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					
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?					
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	()	()	
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					
▶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?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					
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	()	()	
│ │ ▶ 사업개시일이 5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					
- 시합계시골이 3년 이용된 기합의 용구 되는 2개 회계원보고 물면 제구제표용 구제미율이 원득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가?(단,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					
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"BBB 이상"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					
때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					
예외로 함.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	()	()	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		,	\	,	
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					
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					
※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					

▶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?)			
▶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가?)			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, 최소 인건비계상률 여부 등							
►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(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최대 3개, 참여연구자 최대 5개)를 초과하였는가?	()	()			
▶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하였는가?			()			
▶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최소 10%를 충족하지 못하는가?			()			
최근 3개년도 계속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에 해당하는가?(해당될 경우에 한계기업으로 분류됨)			()			
 ▶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 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?(한계기업인 경우에 한함)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동시수행 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※ "한계기업"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	()	()			
□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 하는가?)	()			
□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▶ 기타 공고문 및 사업별 안내문 상의 신청자격상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?)	()			
1	()	()			
②	()	()			
3	()	()			
4	()	()			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. 만약,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							
제출일자 : 20)23.	4.	00.				
연구개발기관명 :			(인)				
연구개발기관 유형 : (중소, 중견, 대기업, 출연연구소 등)							
연구개발기관 대표자 :			(인)				
(공동)연구책임자 :			(인)				
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							

 $[\]times$ 모든 신청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)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

[※]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√표